

## < 수정안 >

### 서울특별시 강서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강서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서울특별시 강서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제9조 중 “제공할 수 있다”를 “제공하여야 한다”로 한다.

제11조 중 “시행할 수 있다”를 “시행하여야 한다”로 한다.

제12조 중 “시행할 수 있다”를 “시행하여야 한다”로 한다

## 수정안 조문 대비표

조 례 안	수 정 안
제9조(피해아동 및 가족지원) 구청장은 아동의 안전 확보와 아동학대 재발 방지, 건전한 가정기능의 유지 등을 위하여 피해아동 및 보호자를 포함한 피해아동의 가족에게 상담, 교육, 의료적·심리적 치료 등의 필요한 지원을 <u>제공할 수 있다.</u>	제9조(피해아동 및 가족지원) 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제공하여야 한다.</u>
제11조(교육) 구청장은 법 제26조의2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서구민을 대상으로 한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한 교육을 <u>시행할 수 있다.</u>	제11조(교육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시행하여야 한다.</u>
제12조(행사와 홍보)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한 행사와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를 <u>시행할 수 있다.</u>	제12조(행사와 홍보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시행하여야 한다.</u>